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송등에서 거짓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9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4. 11. 6.

(3) 회 부 일 : 2024. 11.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인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① 의료인은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2)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에 따른 정기간행물 4. 제57조제1항제4호4)에 따른 인터넷 매체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② ~ ⑥ (생략)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1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협조의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때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의사 등 의료인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시청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성·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됨.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 4)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생략)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형벌, 자격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⁵⁾

- 5)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광고가 아닌 형태로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제66조제1항제1호)6)를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신문·정기간행물·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품위손상 행위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7)

□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의료인 중앙회(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4. ~ 7. (생략)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⁸⁾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의 장이 요구한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라 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방송 등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2 위반)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며, 이는 의료인 중앙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 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의 심의결과 정보 공유에 따른 것이 2건임.

< 방송 등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을 사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 현황 >

처분연도	직종	의뢰기관	처분종류	위반행위
2015	한의사	대한 한의사 협회	자격정지 1개월	방송에 출연하여 쌍둥이(쌍태아) 임신이 가능한 달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한 달에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60%라고 하는 등 한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함
2018	의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자격정지 1개월	2016.1.29., 2016.2.2. 두 차례에 걸쳐 ‘***의 **정보쇼’에 출연하여 지방 분해술’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의 치료 원리와 효과를 설명하며 “체지방 감소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유일한 장비이고,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부, 근육, 혈관, 신경의 손상 없이 지방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게 되고, 체형이나 부위에 상관없이 단시간에 시술이 가능하며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이 없으며 다운타임이 없어서 일상생활로 즉시 복귀가 가능하고, 시술 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요요가 없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소개함

8)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연도	직종	의뢰기관	처분종류	위반행위
2018	의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자격정지 10일 (포장 수훈 이력으로 2/3 감경)	2016.3.6. 두 차례에 걸쳐 ‘** 알아야 낫는다’ 및 ‘**매거진’에 출연하여 당뇨병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인슐린펌프(인공췌장기)’에 대해,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깐 완치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 방법 이지요” 라고 언급하는 등 건강·의학정보에 대하여 과장하여 제공함
2021	한의사	대한 한의사 협회	자격정지 1개월	한의사는 2021.7.1.경 유튜브를 통해 ‘고추나무(마른) 줄기’를 이용한 차가 ‘코로나19 치료 및 증상개선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 방송 등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 사유로 한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	4	2	1	-	-	-	-	1	-	-	-
처분	2	1	-	-	-	-	-	1	-	-	-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회 요구 후 자격정지 미처분된 사례(2건) >

처분연도	의뢰기관	의뢰 사유 (윤리위원회 결정)	비고
2015	대한 한의사 협회	2015년 TV조선의 이경규의 진짜카메라에 출연하여 한의사임을 밝히고 집에서 쉽게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비법으로 무즙을 코에 바르고 참기름을 함께 바르는 방법, 피의뢰인의 약재가 묻어 있는 면봉을 코 안에 집어넣어 먼지바이러스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침대 위에 양파를 놓아두어 알리신이나 유헤아릴이란 성분을 통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는 등 한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함.	법원조정 거처 협회의 권리정지 10개월 징계로 종결
2016	대한 치과의사 협회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바디 임플란트가 치주염, 악취를 일으키고, 특정세균 증식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특정세균에 의한 암유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투바디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치과의를사를 부도덕한 인물로 매도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를 초래함.	인터뷰 기사, 규정 시행 (‘15.9.15.) 이전 위반으로 처분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의료인 또는 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을 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2조(의료행위 등)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24년 11월 현재까지 총 223건으로 나타난 바 있음.¹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위반 심의제재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합계
지상파	8	5	0	1	1	14	0	2	1	0	32
라디오	2	4	0	2	0	1	0	0	0	0	9
종편보도	24	11	0	0	1	2	0	2	3	0	43
전문편성	30	31	6	9	14	1	11	20	13	3	138
홈쇼핑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64	51	6	12	16	19	11	24	17	3	223

주: 의료인·약사 등 출연자의 직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위반 심의제재 현황을 분류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10)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의 준수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재 사례가 모두 개정안의 거짓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 개정안은 의료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시청자 등의 혼란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직접 건강관리 등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금지를 의료인 준수사항과 자격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 책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¹¹⁾의 심의 내역 등을 모니터링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관계 기관 뿐 아니라 각 의료인 중앙회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대상의 범위를 ‘관계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보건복지부 간 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에 미디어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주요 언론자율규제기구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1961년 출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1991년 출범), 인터넷신문위원회(2012년 출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방송 등을 통한 의료인의 건강 관련 거짓 정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의료인의 거짓 정보제공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모든 매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있어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 중앙회의 행정처분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대한의사협회(반대)

-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고, 의학정보 관련 ‘거짓’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의료전문가의 자문 등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안은 법안과 같이 법적 제재로 해결하는 것보다 의료인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2015. 3.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을 위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¹²⁾을 마련하였고, 세계의사회(WMA : World Medical Association)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음.

3) 대한한 의사협회(반대)

- 방송에 출연하는 쇼닥터를 규율할 필요는 있으나 본 개정안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 향후 의료인 간의 분쟁에서 ‘거짓 정보’의 해석을 두고 악용될 우려가 있음.

4) 대한치과의사협회(반대)

- ‘거짓 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국민에게 부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외의 다수 의료인이 비난받는 것을 방지하며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는 등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12) <기본원칙>

- ①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 ④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 아니 된다
- ⑤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의약품과 같은 효능인 것처럼 제공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지하고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7) 한국방송협회(반대)

- 개정안이 규제하려는 행위는 이미 현행법에서 금지된 사항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친근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 등의 방송 출연 의사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시청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차단하는 부작용만 낳게 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494